

목 차

제 1 조 총 칙	2
제 2 조 정 의	3
제 3 조 사용범위	5
제 4 조 항공권	6
제 5 조 운 임	9
제 6 조 예 약	10
제 7 조 항공권 구매	11
제 8 조 탑 승	11
제 9 조 수하물	12
제 10 조 항공 스케줄 지연 및 취소	19
제 11 조 노선 및 항공권 변경	20
제 12 조 항공권 환불	21
제 13 조 기내에서의 행위	23
제 14 조 운송 거부 및 제한	24
제 15 조 출입국 수속	25
제 16 조 고객 서비스	27
제 17 조 손해 배상 책임	27
제 18 조 효력 및 수정	30



CHINA SOUTHERN



제 1조 총 칙

1.1. 주요내용

중국 남방항공 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 여객, 수하물에 관한 일반 국제 운송 약관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2. 정 의

1.3. 사용범위

1.4. 항공권

1.5. 운 임

1.6. 예 약

1.7. 항공권 구매

1.8. 탑 승

1.9. 수하물

1.10. 항공 스케줄 지연 및 취소

1.11. 노선 및 항공권 변경

1.12. 항공권 환불

1.13. 기내에서의 행위

1.14. 운송 거부 및 제한

1.15. 출입국 수속

1.16. 고객 서비스

1.17. 손해 배상 책임

1.18. 효력 및 수정



제 2조 정 의

2. <중국 남방항공 주식회사 승객, 화물 국제운수약관>(이하 “약관”이라 명한다) 안의 아래와 같은 용어가 내포한 의미는 아래와 같다.
- 2.1. “남방”이란 중국 남방항공 주식회사를 말한다.
- 2.2. “협약”이란 1929 년 10 월 12 일 와르소에서 조인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 (이하 “와르소 협약”이라 칭함) 또는 1955 년 9 월 28일 헤이그에서 개정된 협약 (이하 “개정 와르소 협약”이라 칭함) 또는 1999 년 5월 28 일 몬트리올에서 개정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이하 “몬트리올 협약”이라 칭함) 으로서 그 중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 2.3. “국제운송”이란 협정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은 한 운송 계약에 따라 운송 중단 여부에 관계 없이 출발지, 목적지 또는 협의된 경유지가 중국이 아닌 운송을 말한다.
- 2.4. “남방항공 규정”이란 본 약관 이외에 남방항공이 여객 및 수하물 운송 관리에 있어 적용되는 규정을 뜻한다.
- 2.5. “운송인”이란 항공 운송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항공권을 발행하는 항공 운송인과 동 항공권에 의거하여 여객 또는 그 수하물을 운송하거나 이행할 것을 위임 받은 항공 운송인을 포함한다.
- 2.6. “공인 대리점”이란 남방항공을 대신하여 남방항공 서비스와 관련한 항공 운송을 판매하도록 지정한 여객 영업 대리점을 말한다.
- 2.7. “승객”은 승무원을 제외하고 항공권에 따라 항공기로 운송되었거나 운송될 예정인 모든 사람을 뜻한다.
- 2.8. “소아”란 여행이 시작되는 일로부터, 만 2세부터 만 12세가 넘지 않은 승객을 뜻한다.
- 2.9. “영아”란 여행이 시작되는 일로부터, 만 2세가 넘지 않은 승객을 뜻한다.
- 2.10. “항공권”이란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을 위하여 운송인에 의하여 발행되는 “여객항공권 및 수하물 영수표” 또는 전자항공권을 의미하며, 운송계약의 조건, 성명, 통지 및 탑승용 쿠폰 여객용 쿠폰 및 기타 쿠폰을 포함한다.



- 2.11. “연결 항공권”이란 한 여객에게 동시에 발행되는 2매 이상의 항공권으로서, 단일 운송 계약을 형성한다.
- 2.12. “탑승용 쿠폰”이란 여객 항공권의 일부분으로서 운송이 유효하게 이행 될 특정 구간을 명시한 쿠폰을 말한다.
- 2.13. “여객용 쿠폰/여객용 영수표”란 여객 항공권의 일부분으로서 여객과의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증거서류를 말한다.
- 2.14. “일(日)”이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의미하며, 법적 공휴일을 포함한 총 일력 일수를 말한다. 단 통지를 할 경우에 당해 통지일은 일수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유효기간의 산정을 위한 경우에는 항공권 발행일 혹은 여행 개시일은 계산치 아니한다.
- 2.15. “통상운임”이란 통상적인 항공 운송을 위해 설정되어 있는 비할인 운임이며, 동 운임을 적용할 경우에는 특별히 제한된 항공권 유효기간 또는 기타 특별한 조건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이는 일등석, 비즈니스석, 이코노미석이 포함된 운임이며, 어린이와 소아의 가격은 본 운임에서 백분 비율로 계산 된다.
- 2.16. “특별운임”이란 통상운임 외의 운임을 말한다.
- 2.17. “수하물”이란 여객이 자신의 여행과 관련하여 착용 또는 사용하거나 안락 또는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적절한 여객의 물품, 용품 및 기타 휴대품을 의미하며,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위탁 수하물 및 휴대 수하물을 공히 포함한다.
- 2.18. “수하물 영수표”란 위탁 수하물의 식별과 운송을 위하여 발행된 증표이다.
- 2.19. “위탁 수하물”이란 여객이 유효한 항공권과 함께 제출한 물품에 대해 운송인이 접수하고 수하물표를 발행한 수하물을 말한다.
- 2.20. “비위탁 수하물”이란 위탁 수하물 이외 여객이 스스로 보관하는 수하물을 말한다.
- 2.21. “수하물 식별표”란 위탁 수하물의 식별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문서를 말한다.
- 2.22. “합의된 도중 착륙지”는 출발지와목적지를 제외하고 항공권에 설명되어 있거나 시간표에 노선의 경유지로 예약되어 있는 장소를 뜻한다.
- 2.23. “도중 체류지”란 여객의 여행에서 잠시 머무르도록 예정된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의 지점을 말한다.



- 2.24. “손해”란 항공운송이나 그에 부수하여 운송인이 행하는 서비스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사망, 상해, 지연, 분실 또는 기타 여하한 성질의 손해도 포함된다.

제 3조 사 용 범 위

3. 약관의 적용

3.1 일반규정

- 3.1.1. 본 조항 중 3.2, 3.3 및 3.4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남방항공 항공운송 약관은 남방항공 항공편 또는 항공구간에 적용된다.
- 3.1.2. 무상과 할인운송, 운송표에 별도의 규정 외, 본 약관은 무상운송과 할인운송에 효력을 미친다.
- 3.1.3. 정부법규 및 유관한 계약서, 운송표에 별도의 규정 외 본 약관은 특별관리 되는 국내노선에 효력을 미친다.
- 3.2. 남방항공 전세운송 계약에 의거 행하는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에 대해서 당해 전세운송 계약이 우선하여 적용되며, 전세운송계약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 운송약관을 적용한다.
- 3.3. 본 약관의 내용 중 만일 사용되고 있는 국제공약, 국가법률, 정부기관의 규정, 명령 혹은 요구사항에 불일치 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 불일치 하는 조항 외에 본 약관은 유효한 효력을 갖는다.
- 3.4. 이 운송 약관에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대상과 관련하여 이 운송 약관과 기타 남방항공 규정간의 불일치 시 이 운송 약관을 우선으로 한다.



제 4조 사 용 범 위

4. 사용범위

4.1. 일반 규정

- 4.1.1. 남방항공은 항공권에 이름이 표시되어 있는 승객에게만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며 승객은 적합한 신원 증명 서류를 통해 항공권에 표시된 승객임을 증명해야 한다. 항공권은 어느 경우에도 발행한 항공사의 자산이다.
- 4.1.2. 항공권은 양도하지 못한다. 만일 운송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 자 또는 환불 받을 권리가 있는 자 이외의 자에 의해 항공권이 제시된 경우, 남방항공이 그러한 항공권에 의해 운송을 제공했거나 환불한 것에 대해서, 운송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는 자 또는 당해 환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남방항공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4.1.3. 항공권은 임의대로 변경하여 사용하지 못하며, 변경하였을 경우 항공권은 무효이다.
- 4.1.4. 항공권 사용 규정
- 4.1.4.1. 승객은 해당 항공편에 대한 탑승용 쿠폰과 모든 기타 미 사용된 탑승용 쿠폰 및 승객용 쿠폰을 포함하는 유효한 항공권을 제시하지 않는 한 항공편의 탑승 자격이 없다. 또한 제시한 항공권이 훼손되었거나 남방항공 또는 공인 대리점 이외에 의해 변경된 경우 탑승 자격이 없다.
- 4.1.4.2. 항공권은 출발지로부터 여객용 쿠폰에 명시된 출발지 순서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며 여객용 쿠폰과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 남방항공은 수속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
- 4.1.4.3. 탑승용 쿠폰에 기재되어 있는 등급과 이미 배정받은 좌석의 항공편 및 일자에 근거하여 운송을 받는다.
- 4.1.5. 남방항공의 이름은 항공사 지정코트로 혹은 다른 방법으로 항공권상에 약호 표기될 수 있습니다. 남방항공의 주소는 항공권의 “운송업자”부분에 표시된 남방항공 이름의 첫 번째 약호 명칭의 맞은편에 기재된 출발지 공항이다.



4.2. 항공권의 유효기간

4.2.1. 일반규정

- 4.2.1.1. 통상운임으로 발행된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운송개시일로부터 1년 또는 일부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항공권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다.
- 4.2.1.2. 항공권의 유효기간 계산은 여행이 시작된 날 혹은 발권이 된 날의 다음날 0시부터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날의 0시까지 이다.

4.3. 항공권의 유효기간 연장

4.3.1. 일반규정

- 4.3.1.1. 남방항공의 아래와 같은 원인으로 인하여, 여객이 유효기간 내 여행을 하지 못한 경우,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운임의 추정 없이 연장 할 수 있다.
- A. 남방항공이 유효기간 중에 여객의 좌석이 확보되어 있는 항공편을 취소 또는 지연한 경우
 - B. 남방항공이 여객의 출발, 목적 및 도중 체류지의 지정된 지점에 기항하지 못한 경우
 - C. 남방항공이 운항시간표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항하지 못한 경우
 - D. 남방항공 사정에 의하여 여객이 타 항공편에 접속되지 못한 경우
 - E. 남방항공이 객실 등급을 변경한 경우
 - F. 남방항공이 사전에 확보한 좌석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4.3.1.2. 유효기간이 1년인 항공권을 소지한 여객이 예약을 요청할 시 좌석 예약이 불가능한 경우, 당해 유효기간을 초과하여 7일까지
- 4.3.1.3. 적용 태리프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질병의 발병으로 항공권의 유효기간 내에 여행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 남방항공은 건강진단서에 따라 여행이 가능하게 되는 날까지 또는 그러한 날로부터 운임이 지불된 등급에 탑승이 가능하며, 여행이 재개되는 지점 또는 최종 접속지점을 출발하는 첫 항공편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남방항공은 환자를 실제로 동반하는 자의 항공권 유효기간도 동일하게 연장한다.
- 4.3.1.4. 여행 도중 여객 사망 시 최소 체류기간을 적용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해당

승객과 동행하는 승객의 항공권을 수정할 수 있으며, 비자발적 환불 규정에 의거하여 환불수속도 가능하다. 유효기간 수정 및 환불은 유효한 사망증명서를 통해 이행되어야 하며 유효기간 연장은 사망증명서에 표시된 사망일로부터 45일을 초과할 수 없다.

4.4. 항공권 분실

4.4.1. 여객이 항공권, 탑승용 쿠폰을 분실 하여 여정이 영향을 미친 경우 본인이 책임지며 남방항공은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여객은 남방항공에게 분실한 항공권의 환불 및 재 발행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4.4.2. 분실항공권의 분실신고

4.4.2.1. 여객이 항공권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분실 혹은 훼손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여객은 반드시 남방항공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티켓분실신고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4.2.2. 항공권을 분실하였을 경우 반드시 원래 항공권의 일자, 비행노선, 분실 장소의 공안증명 및 기타 남방항공에서 요구하는 자료 및 증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4.4.2.3. 여객이 항공권을 분실하였을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내 분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4.4.2.4. 만일 항공권이 도용되었거나 무단 환불되었을 경우, 남방항공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4.3. 분실 항공권의 재 발행 및 환불

4.4.3.1. 재 발행과 동시에 원래의 항공권은 폐기한다. 재 발행된 신규 항공권은 환불할 수 없다.

4.4.3.2. 만일 분실사실에 대해 만족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신규항공권을 재발행 받을 수 없다. 만일 여객이 계속하여 여행을 하기 원하는 경우, 반드시 통상운임의 새로운 항공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4.4.3.3. 환불수속의 기한은 첫 번째 여정(미사용 티켓의 경우 발권일 기준)일로부터 18개월 후의 60일 이내 하여야 한다. 만일 본 기간 안에 분실된 항공권이 도용되었거나 무단으로 환불이 된 경우에는 환불 받을 수 없다.

4.4.3.4. 여객이 영수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환불만이 가능하며, 재 발행 신청은 불가하다.

4.5. 도중체류

4.5.1. 정부요구조건과 남방항공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아래, 여객은 도중체류가 가능하다.

4.5.2. 도중체류는 운송인과 사전에 합의하여 반드시 항공권상에 명시되어야 한다..

제 5조 운 임

5. 사용범위

5.1. 운임의 사용

- 5.1.1. 남방항공은 항공권에 이름이 표시되어 있는 승객에게만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며 승객은 적합
- 5.1.2. 항공권의 운임은 남방항공이 공시한 운임이며, 운임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남방항공의 규정에 따라 운임을 결합한다. 운임은 항공권의 첫번째 탑승용 쿠폰에 명시되어 있다.
- 5.1.3. 여객이 항공권을 구입한 뒤 항공권의 등급을 변경하고자 할 때, 별도의 규정을 제외하고, 여객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차액을 납부하거나 남방항공으로부터 차액 환불 신청을 할 수 있다.
- 5.1.4. 결합 운임을 사용하는 항공권은 반드시 결합 운임의 조건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5.2. 경 로

동일 운임으로 여행할 수 있는 2개 이상의 경로가 있을 경우 항공권 발행 전에 여객이 경로를 지정할 수 있으며, 당해 항공권에 예약이 되어 있지 않은 구간에 대하여는 희망하는 경로를 지정할 수가 있다. 경로가 특별히 지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남방항공이 그 경로를 결정할 수 있다.

5.3. 세 금

정부 또는 기타 당국이나 공항 운영사가 부과하는 적용 가능 세금, 요금 및 수수료는 승객이 지불하여야 한다. 여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 또는 기타 부과금은 공시운임 및 요금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5.4. 지불방식

운임 및 요금의 지불은 정부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고, 남방항공이 수수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임 및 요금이 공시된 통화 이외의 타 통화 수단으로 할 수 있다. 공시운임 또는 요금을 판매통화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남방항공이 설정한 환율을 사용한다.

제 6조 예 약

6. 사용범위예약의 기본 조건

6.1. 예약의 기본 조건

6.1.1. 남방항공 혹은 그 공인 대리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예약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예약은 반드시 남방항공의 규정에 따라 발권 시한 내에 항공운임을 납부하여야 한다.

6.1.2. 특정 운임에는 예약 변경이나 취소 권리를 제한 또는 배제하는 조건이 따른다.

6.1.3. 남방항공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 항공편의 예약접수를 중단할 수 있다.

6.2. 특수여객의 예약

특수여객이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혹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보살핌이 필요하여 어느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켰을 경우 탑승이 가능한 여객을 말한다. 특수여객은 반드시 남방항공 및 기타 공인 대리점의 동의를 얻어야만 예약이 가능하다.

6.3. 발권 시한

남방항공이나 그 공인 대리점이 권고한 대로 지정된 발권 시한 이전에 항공권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남방항공은 해당 예약을 취소할 권리가 있다.

6.4. 개인 데이터

6.4.1. 여객은 예약, 항공권 구매, 부가 서비스 취득, 입국 절차 촉진 및 정부 기관에 관련 데이터 제공 등의 용도로 승객의 여행과 관련하여 남방항공에 개인 데이터를 제공함을 인정한다. 승객은 이러한 용도로 남방항공이 해당 데이터를 보관 및 사용하고 지사, 법률 혹은 법규관련 기관들에게 위의 서비스 제공업체에 전송하는 것을 허용하며, 이는 어느 국가에나 해당이 된다.

6.4.2. 여객의 개인 자료는 진실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초래하는 모든 책임은 여객이 지며 남방항공은 이를 검사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6.4.3. 여객이 개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거절하는 경우 남방항공은 예약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6.5. 예약의 취소

- 6.5.1. 여객이 예약한 좌석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남방항공은 당해 여객의 계속편 또는 복편 예약 등 모든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 6.5.2. 여객이 예약을 변경 혹은 취소하기 원하는 경우, 반드시 남방항공의 규정된 시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7조 항공권 구매**7. 사용범위****7.1. 일반 규정**

- 7.1.1. 남방항공은 여객에게 본인의 유효한 여권 및 기타 여행관련 증명서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해당 증명서의 진실성과 유효성에 관하여 남방항공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 7.1.2. 소아나 영아의 항공권을 구매하는 경우, 반드시 소아나 영아의 출생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7.1.3. 몸이 불편한 여객은 반드시 남방항공에서 인가한 병원에서 의사진단서를 받아와야 하며, 남방항공의 동의를 얻은 다음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다.

제 8조 탑 승**8. 사용범위****8.1. 일반 규정**

- 8.1.1. 여객은 남방항공이 지정한 시각까지, 또는 시각이 지정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탑승편의 출발 전에 출국수속 및 탑승수속을 완료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여유를 두고 공항 또는 기타 출발지점에 도착하여야 한다.
- 8.1.2. 여객이 지정된 시각까지 당해 공항 또는 기타 출발 지점에 도착하지 못하거나 서류 불



비로 여행이 불가능한 경우 남방항공은 예약된 좌석을 취소 할 수 있다. 항공편의 예정 출발시각 이전에 제반 수속을 완료할 수 없는 정도로 공항 또는 기타 출발지점에 늦게 도착한 여객을 위하여 출발시각을 지연시킬 수 없으며, 여객이 본 규정을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나 비용에 대하여 남방항공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8.2. 좌석 배정

- 8.2.1. 남방항공은 항공기내 특정 좌석의 배정을 보증하지 아니하며, 여객의 항공권에 표기되어 있는 좌석의 등급에 따라 좌석을 제공할 책임만을 가진다.
- 8.2.2. 기내 비상구 좌석은 반드시 남방항공이 지정한다.

제 9조 수하물

9. 사용범위

9.1. 일반 규정

9.1.1. 수하물로 허용되지 않는 품목

여객은 위탁 수하물이든 비위탁 수하물이든 관계없이 수하물에는 다음을 포함할 수 없으며, 몸에 지니고 기내로 탑승할 수 없다.

9.1.1.1. 본 약관의 내용 중 2.17항 정의의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

9.1.1.2. 항공기나 사람 또는 기내 자산에 위해가 될 수 있는 품목이며,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위험물 항공 운송에 관한 기술 규정> 및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위험물 규정> 및 남방항공 자체 규정 등에서 정한 운송이 거부되는 위험한 품목을 금지한다.

9.1.1.3. 출발, 도착, 경유국가에서 사용하는 법률, 조례 혹은 명령에 따라 운송이 금지된 품목.

9.1.1.4. 중량, 크기, 모양 또는 수하물의 성질이 남방항공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다고 합당하게 간주한 품목.

9.1.1.5. 살아있는 동물. 단 9.6항에서 정의한 애완견 및 시각장애인 인도견, 청각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

9.1.1.6. 사냥 및 스포츠용이 아닌 총기류 및 탄약은 수하물로의 운송이 금지된다.



9.1.2. 운송이 해서는 아니 되는 품목

위탁 수하물에는 돈, 보석, 귀금속, 양도성 문서, 유가증권 또는 기타 귀중품, 비즈니스 문서, 자료, 여권 및 기타 신원 확인 문서 또는 샘플을 넣어서는 아니 된다.

9.1.3. 운송이 제한되는 품목

남방항공에서 적합한 용기에 적절하거나 안전하게 포장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경우 수하물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9.1.3.1. 견고한 측정기기, 전자기기 등의 물품은 반드시 국제운송 보장 기준을 부합해야 한다.

9.1.3.2. 사냥 및 스포츠용 총기 및 탄약은 9.1.1.2항에서 명시한 대로 위탁 수하물로 운송이 허용되나, 비위탁 수하물로서 기내에 반입할 수 없다. 또한 안전을 위해 총기에서 반드시 탄환이 빼내진 상태여야 하며 남방항공에서 정한 대로 적합하게 포장되어야 한다

9.1.3.3. 날카로운 공구류, 둔탁한 무기류이며 예를 들어 골동품이나 여행기념 칼, 검 및 기타 유사한 물품은 운송이 제한된다.

9.1.3.4. 액체류, 알코올이 함유된 음료, 약품 및 화장품 등은 규정의 수량에 부합하여야 한다.

9.1.3.5. 외교문서, 기밀문서.

9.1.3.6. 본 약관 9.6항에서 정의한 애완견 및 시각장애자 인도견, 청각장애자 보조견.

9.1.3.7. 여객이 여행 중 사용할 접이식 휠체어 및 전동 휠체어.

9.1.4. 운송 거부권

9.1.4.1. 여객의 수하물은 9.1.1항에서 정한 품목 혹은 9.1.2항에서 정한 품목은 남방항공에서 운송 거부 및 운송을 중지시킬 권리가 있다.

9.1.4.2. 중량이 초과되는 수하물에 대해 남방항공에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여객은 임의대로 수하물을 운송 할 수 없으며, 후속 항공편을 이용하여 운송하여야 한다.

9.1.4.3. 만일 남방항공에서 판단하였을 경우 외부포장 및 내부포장이 허용하는 포장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을 경우, 남방항공은 운송 거부 및 운송을 중지시킬 권리가 있다.

9.1.5. 검색권리

남방항공은 안전과 보안상의 이유로 여객의 수하물 내용물을 확인할 권리는 가지며, 필요한 경우 승객이 없는 상태에서 수하물을 검색할 수 있다. 이러한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여객과 수하물의 운송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9.2. 위탁 수하물

9.2.1. 여객이 수하물을 위탁할 시 반드시 아래의 요구사항에 부합하여야 한다.

9.2.1.1. 여객이 위탁하고자 하는 수하물엔 1건마다 유효한 수하물 식별표를 발행한다.

9.2.1.2. 여객은 반드시 운송인이 지정한 장소와 시간 내에 수하물 위탁 수속을 해야 한다.

9.2.1.3. 수하물의 중량 및 크기는 남방항공의 규정에서 초과해서는 안되며, 초과하는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남방항공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9.2.1.4. 위탁 수하물의 내부와 외부에는 여객의 이름이나 기타 개인 식별 가능한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9.2.1.5. 수하물은 반드시 열쇠로 잘 채워야 하며, 일정한 압력에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9.2.1.6. 위탁 수하물과 여객은 동일한 항공편에 탑승이 된다. 만일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위탁 수하물과 여객이 동일한 항공편에 탑승하지 못하는 경우, 남방항공은 위탁수하물을 후속 항공편으로 운송한다.

9.3. 무료 수하물 허용량

9.3.1. 여객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 (위탁 수하물 및 비위탁 수하물포함) 은 운임이 지불된 각 등급에 적용되는 무료 수하물 허용량이다.

9.3.1.1. 무료 수하물 허용량의 합산

A. 성인 혹은 소아 항공권을 동반하거나 일등석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은 40kg이며, 비즈니스석의 허용량은 30kg, 이코노미석의 허용량은 20kg이다.

B. 영아를 동반한 경우 영아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은 10kg이며, 영아의 유모차 혹은 요람은 무료로 운송 위탁하고 있다.

9.3.1.2. 무료 수하물 허용량 크기 및 수량 제한

미국령 혹은 캐나다령이 여정에 포함되어 있을 시 무료 수하물 허용량의 크기 규정은 다음과 같다 :

A. 성인 혹은 소아 항공권을 동반하거나 일등석 및 비지지스석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은 2건이며, 매 건은 3면의 총합이 158cm를 넘어서는 안되며, 최대 중량은 32kg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이노코미석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은 2건이며, 그중 한건의 수하물의 3면의 총합이 158cm를 넘어서는 안되고, 2건의 3면의 총합이 273cm를 넘어서는 안되며, 매 건의 최대 중량은 32kg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B. 영아를 동반한 경우 영아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은 1건이며, 3면의 총합이 115cm가 넘어서는 안되며, 접이식 유모차도 그러하다.

9.3.1.3. 여러 등급이 섞인 항공권을 구입한 여객이 수하물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매 항공일정에 따른 좌석 등급에 따라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다르게 계산한다.

9.3.1.4. 동일 항공편으로 동일 목적지 혹은 도중 체류지가 2곳 (2곳 포함) 이상인 여객이 위탁을 할 때,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에서 위탁 수속을 하는 경우, 무료 수하물 허용량은 항공권을 구매한 등급에 따라 계산이 된다.

9.3.1.5. 국제운송과 국내 항공 여정이 결합된 경우, 여객은 무료 수하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반드시 국제 항공 여정의 규정에 상응하게 처리한다.

9.3.1.6. 여객이 자발적으로 좌석 등급을 변경한 경우, 좌석 등급을 변경 후에 상응하는 등급의 무료 수하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여객이 비자발적으로 좌석 등급을 변경한 경우, 원래의 항공권에 표시되어 있는 등급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만이 허가된다.

9.3.2. 비위탁 수하물의 제한

9.3.2.1. 중량과 크기

여객이 기내로 휴대하는 비위탁 수하물의 경우 중량은 5kg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3면의 총합이 115cm가 넘어서는 안되고, 기내 선반이나 좌석 밑에 수용이 가능해야 한다.

9.3.2.2. 대형 수하물

크기가 초과되는 대형 품목(악기류 등)은 위탁 운송할 수 없으며, 반드시 여객이 기내에 휴대하고 들어가야 하고, 반드시 사전에 남방항공에게 사전 동의를 얻어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9.3.3. 여객이 수하물을 위탁을 하거나 비위탁을 하는 경우 모두 균일하게 탑승 수속을 할 때 남방항공은 무게와 수량을 계산하며, 해당 무게와 수량을 수하물 식별표에 기입을 한다. 위탁 수하물의 경우 운송하는 기간 동안 남방항공이 보관할 책임을 갖게 되며, 비위탁



수하물의 경우 운송하는 기간 동안 여객 스스로 보관할 책임을 갖는다.

9.4. 초과 수하물 요금

9.4.1. 초과 수하물은 무게가 초과 되었거나 수량이 초과된 수하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초과수하물 요금을 부과한다.

9.4.2. 여객은 반드시 초과한 수하물에 대하여 요금을 부과해야 하며, 남방항공 혹은 동등한 권한을 가진 대리인이 초과 수하물 요금표를 발행한 후 위탁할 수 있다. 초과 수하물 요금율과 계산 방법은 남방항공의 규정에 따른다.

9.5. 종가요금

9.5.1. 일반 규정

9.5.1.1. 위탁 수하물의 경우 킬로그램당 미화 20불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기타 화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여객은 그 가격을 신고할 수 있다.

9.5.1.2. 위탁 수하물의 종가요금은 수하물 자체의 실제 가치를 초과할 수 없다.

9.5.1.3. 여객이 위탁하는 동물은 종가요금을 신고할 수 없다.

9.5.1.4. 남방항공은 남방항공이 행하는 운송에 대하여 상기 금액을 초과하는 신고가격에 대한 종가요금을 그 단수액당 미화 0.50불의 율로 징수한다.

9.5.2. 여객 1인당 신고가격이 미화 2500불을 초과하는 수하물에 대하여 남방항공은 운송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

9.6. 애완동물, 시각 장애인 인도견, 청각장애자 보조견

9.6.1. 애완동물은 가정에서 양육하는 개, 고양이, 새 혹은 기타 관상용 동물을 뜻한다. 야생동물과 형태가 괴이하거나 혹은 타인에게 해를 가할만한 위험성이 있는 동물 (뱀 등) 은 애완동물의 범위에 들지 아니하며, 운송할 수 없다.

9.6.2. 여객이 애완동물을 휴대하는 경우 반드시 아래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9.6.2.1.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과 입국이나 환승국가에서 요구하는 유효한 증명서를 지녀야 한다.

9.6.2.2. 사전 남방항공과 후속 운송인의 동의를 얻고, 남방항공의 운수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9.6.3. 애완동물의 보관 용기 및 사료 등은 무료 수하물 허용치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추가 수하

물로 간주되어 여객은 초과된 부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남방항공의 특별한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기내로 반입할 수 없다.

- 9.6.4. 시각 장애인 인도견과 청각 장애인 보조견은 전문 훈련을 통하여 시각 장애자를 위하여 길을 안내할 수 있어야 하며, 청각장애자를 위하여 소리를 듣고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
- 9.6.5. 남방항공의 9.6.2항의 규정에 따라 시각 장애인 인도견 혹은 의사 증명이 있는 청각 장애인의 경우 인도견과 보조견을 무료로 운송위탁 할 수 있다.
- 9.6.6. 여객은 위탁하는 애완동물 (시각 장애인 인도견 및 청각 장애인 보조견 포함)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진다. 만일 애완동물이 입국이 거절 되거나 부상, 분실, 질병 혹은 사망하였을 경우 남방항공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9.6.7. 중간에 체류하지 않는 장거리 비행 항공편이거나 어느 특정의 기종일 경우 기내 애완동물, 시각 장애인 인도견 및 청각 장애인 보조견을 운송함에 있어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남방항공은 운송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

9.7. 수하물 수취

- 9.7.1. 여객은 수하물 식별 태그로 수하물을 식별하고 목적지 혹은 중간 체류지에서 수하물 식별표로 수하물을 수취한다. 수취할 시 반드시 수하물 식별표를 검사를 받아야 한다.
- 9.7.2. 남방항공은 반드시 수하물 식별표에 기재된 목적지 및 중간 체류지에서 수하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남방항공의 동의를 얻어 중간 경유지에서 수하물을 수취할 수는 있으나, 이미 납부한 추가 수하물 요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 9.7.3. 남방항공은 수하물 식별 태그에 의거하여 짐을 인도하며, 수하물을 수취하는 수취인의 본인여부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및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9.7.4. 위탁 수하물의 수하물 식별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수하물 수취를 요구하는 경우 여객이 자신의 수하물에 대한 권리를 남방항공이 납득할 수 있도록 증명을 한 경우에만 해당 수하물을 전달할 수 있으며, 반드시 남방항공의 규정에 따른 성명서를 작성해야 하고,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남방항공의 손실을 배상하는 성명에 동의 해야 한다.
- 9.7.5. 수하물 전달 시점에서 수하물 식별표 소유자가 별도의 클레임 없이 수하물을 취하는 것은 여객이 별도로 증명하지 않는 한 수하물이 운송 계약에 따라 양호한 상태로 전달되



있음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된다.

9.8. 수하물 배상

9.8.1. 배상 금액

9.8.1.1. 사전 증가요금을 신청한 수하물 이외 여객이 위탁한 수하물이 전부 혹은 일부가 훼손, 분실된 경우 배상금액은 매 키로당 미화 20불 혹은 상등하는 기타 화폐로 한다. 비위탁 수하물의 배상금액은 여객 1인당 미화 400불 혹은 그에 상응하는 기타 화폐로 한다.

9.8.1.2. 만일 항공권에 위탁 수하물의 중량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중량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보통 좌석 등급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수하물 중량을 초과할 수 없다.

9.8.1.3. 본 약관 9.5.1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위탁한 증가요금 수하물은 증가요금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증가요금이 수하물의 실제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수하물의 실제 가치에 비례하여 배상한다.

9.8.2. 손해배상 청구기한 및 제소기한

9.8.2.1. 손해배상 청구기한

A. 수하물 전달 시점에서 수하물 식별표 소유자가 클레임 없이 수하물을 취하는 것은 여객이 별도로 증명하지 않는 한 수하물이 운송 계약에 따라 양호한 상태로 전달 되었음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된다.

B. 수하물이 손상된 경우 손해 발견 즉시 남방항공에 알려야 하며, 클레임은 늦어도 위탁 수하물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위탁 수하물의 도착이 지연된 경우 위탁 수하물이 제공된 날짜로부터 늦어도 21일 이내에 남방항공에 알려야 한다.

C. 모든 손해배상 청구는 서명형식을 통하여 상기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남방항공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9.8.2.2. 손해배상에 관련한 제소는 목적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항공기가 도착되었어야 할 날로부터, 또는 운송이 중지된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되어야 하며, 그 기간 이후에는 남방항공에 대한 여객의 제소권은 소멸된다.



제 10조 항공 스케줄 지연 및 취소

10. 사용범위

10.1. 항공 스케줄

10.1.1. 남방항공은 유효한 일정의 항공편 시간을 여객에게 통보하며 이는 항공권에 표시가 된다.

10.1.2. 스케줄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남방항공은 시간표 또는 기타 스케줄 표시상의 오기 또는 누락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담치 아니한다.

10.1.3. 시간표 또는 기타 유인물에 표시되는 시간은 예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는 남방항공과 여객과의 운송계약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10.2. 변경, 취소

아래와 같은 경우 남방항공은 예고 없이 운송인 또는 항공기를 변경, 취소, 중지 또는 지연시킬 수 있다.

10.2.1. 국가의 규정, 명령, 요구 또는 지시

10.2.2. 비행 안전 보장

10.2.3. 예측, 예기 또는 예지하지 못한 사실

10.3. 남방항공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불이행 및 지연의 경우

아래와 같이 남방항공의 원인으로 인하여, 이미 좌석을 배정받은 여객이 탑승하지 못한 경우.

10.3.1. 일시적인 항공편 기종의 변경.

10.3.2. 10.2항의 원인 이외, 항공편의 일시적으로 취소.

10.3.3. 남방항공의 과실로 이미 좌석을 배정받은 승객의 좌석을 취소한 경우.

필요한 경우, 남방항공은 실제 사실과 관련 규정을 근거로 여객에게 다음 연결편을 연결 해주어야 하며 대기하는 동안 숙식을 무료로 제공한다.

10.4. 여객은 10.3의 원인으로 여행을 하지 못하고 환불을 원하는 경우 비자발적 환불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1조 노선 및 항공권 변경

11. 사용범위

11.1. 여객이 이미 시작된 여행 중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 항공권 내 사용하지 않은 노선, 목적지, 항공사, 좌석등급, 항공편 및 유효기간을 변경하는 것을 자발적 노선 변경이라 한다.

11.2. 남방항공에서 여객이 이미 예약한 항공편을 취소하였거나 목적지에 가는 항공편을 취소 혹은 합리적이지 못한 항공 스케줄로의 비행, 이미 예약한 여객에게 사전에 노선이 변경을 하였음을 알리지 않은 것을 비자발적 노선 변경이라 한다.

11.3. 자발적 노선 변경

11.3.1. 여객이 자발적으로 노선을 변경하기 원하는 경우, 반드시 항공권에 표기되어 있는 목적지의 도착 전에 신청을 하여야 하며, 남방항공에서 원래의 항공권에 특별한 제한조건의 여부를 검사한 다음 처리하도록 한다.

11.3.2. 노선을 변경한 뒤 항공권 비용 및 기타 비용과 원래의 항공권 비용 및 기타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여객은 해당 금액을 지불하거나 반환 받을 수 있다.

11.4. 비자발적 노선 변경

남방항공의 원인으로 인하여 여객이 비자발적으로 노선을 변경하는 경우 남방항공은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 여객에게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11.4.1. 여객을 위하여 이용 가능한 후속 항공편을 배치한다.

11.4.2. 여객 및 관련 운송인의 동의를 얻어 수속을 처리한다.

11.4.3. 원래의 항공권에 표기되어 있는 노선을 여객의 목적지 및 중간 도착지점까지 변경하도록 한다.

11.4.4. 만일 여객이 환불을 원하는 경우, 비자발적 환불 규정에 따라 환불하도록 한다.

상기 이상의 조치 이외 남방항공은 여객에게 다른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제 12조 항공권 환불

12. 사용범위

12.1. 일반규정

12.1.1. 남방항공이 운송 계약에 따라 운송하지 못하였거나, 여객이 자발적으로 여행 일정을 변경하기 원하는 경우, 여객이 전 여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일부 사용한 항공권에 대하여 남방항공의 본 12조의 규정에 따라 환불 처리를 한다.

12.1.2. 여객이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분실 항공권을 제외하고 미 사용한 탑승용 쿠폰과 여객용 쿠폰에 근거하며, 만일 연결 항공권인 경우 온전한 연결 항공권을 제시하여야 환불 처리가 가능하다.

12.2. 환불 수취인

12.2.1. 남방항공은 항공권에 이름이 표시된 여객 본인에게 환불 수속을 할 권리가 있다.

12.2.2. 항공권에 이름이 표시된 여객이 아닌 사람이 항공권 금액을 지불하였고 항공권에 환불 제한 조건이 표시된 경우 항공권 금액을 지불한 사람에게만 또는 해당 사람의 요청에 따라서만 환불을 이행할 수 있다.

12.2.3. 여객 혹은 항공권 금액을 지불한 사람이 환불을 신청할 때 반드시 본인의 유효한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만일 환불을 신청한 자가 항공권에 이름이 표시된 여객 본인이 아니거나 항공권 금액을 지불한 본인이 아닐 경우 환불 신청자의 본인의 유효한 신분증, 여객 혹은 납부인의 유효한 신분증 및 환불 위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2.4. 남방항공은 12.1항의 규정에 따라 12.2.1항, 12.2.2항, 12.2.3항의 규정에 부합된 사람이만이 정당한 환불로 간주된다.

12.3. 환불 거부권

여객이 환불을 요구할 때 늦어도 여행을 시작한 날로부터 (전 여정을 사용하지 않은 항공권) 13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시간이 초과된 경우는 신청 받지 않는다.

이미 운송인이나 국가정부기관에서 출국수속을 한 항공권은 남방항공에서 환불하지 않는다. 만일 여객이 해당 국가에서 체류허가를 받거나 다른 항공사 혹은 다른 교통수단으



로 해당 국가를 출국하였을 경우 남방항공에 입증증명을 한 다음 여객에게 환불처리를 할 수 있다.

12.4. 환불 장소

여객은 항공권을 구입한 장소에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항공권을 발행한 남방항공 대리점에서 처리한다.

12.5. 통화

환불은 항공권을 최초로 구입한 국가 및 환불이 행하여 지는 국가의 법령, 규정 또는 명령에 따라 행한다. 상기 규정에 따라, 환불은 운임지불 시 사용한 통화 또는 환불이 행해지는 국가의 법화 또는 항공권이 구입된 국가의 통화로서 운임이 당초 징수된 통화금액에 상당하는 액으로 한다

12.6. 비자발적 환불

10.2항, 10.3항에 근거하여 남방항공이 항공편을 취소하였거나, 일정에 따라 합당하게 운항하지 못하였거나, 도착지 또는 도중 체류지에 착륙하지 못하였거나 승객이 예약한 연결 항공편을 놓치게 된 경우 여객으로부터 받는 환불 신청을 비자발적 환불로 간주한다.

12.6.1. 비자발적 환불은 아래와 같은 규정으로 처리한다.

12.6.1.1.항공권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환불 금액은 지불한 금액과 같다.

12.6.1.2.항공권을 일부 사용한 경우 항공권은 지불한 금액과 항공권을 사용한 구간의 여행에 적용되는 요금 사이의 차액 이상이며, 이 경우 환불 금액은 총 지불 금액을 넘지 않는다.

12.6.1.3.여객이 혼합요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해당 항공권의 환불은 특수규정에 따라 환불 시 특수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2.7. 자발적 환불

12.6의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환불을 자발적 환불로 간주한다.

12.7.1. 자발적 환불은 아래와 같은 규정으로 처리한다.

12.7.1.1.항공권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지불한 금액에서 합당한 서비스 수수료나 취소 수료를 제한 금액을 환불한다.



12.7.1.2.항공권을 일부 사용한 경우 환불 금액은 지불한 금액과 항공권을 사용한 구간의 여행에 적용되는 금액 사이의 차액에서 합당한 서비스 수수료나 취소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한다.

12.7.1.3.혼합요금을 사용한 여객이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항공권의 환불은 특수규정에 따라 환불 시 특수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2.8. 분실 항공권 환불

여객이 분실한 항공권을 환불 요구를 하는 경우 본 약관의 4.4.3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3조 기내에서의 행위

13. 사용범위

13.1. 항공기에 탑승한 여객이 항공기나 기내의 사람 혹은 자산에 해를 가하였거나, 승무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거나, 타 승객이나 승무원에게 불안, 불편, 손해 또는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한 경우에는 구속을 포함하여 이러한 행위의 지속을 방지하기 위해 합당한 필요조치를 취할 수 있다.

13.2. 남방항공은 안전상의 이유로 항공기 탑승 중의 전자 장비 사용을 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여기에는 휴대전화, 랩톱 컴퓨터, 휴대용 녹음기, 라디오, CD플레이어, 무선제어 장난감 및 위키토키 등을 포함하는 전자게임 또는 전송 장치 등이 포함된다. 남방항공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청각 보조장치 및 심박 조절장치 이외의 모든 전자제품은 기내에서 사용을 금지한다.



제 14조 운송 거부 및 제한

14. 사용범위

14.1. 운송 거부

남방항공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거 다음 경우에는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을 거절한다.

- 14.1.1. 출발, 도착, 경유 국가의 명령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이러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14.1.2. 여객의 행동, 연령 또는 정신적, 육체적 조건으로 인하여, 남방항공의 특별취급이 필요한 경우; 타 여객에 불안을 초래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자신, 타 여객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유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 14.1.3. 여객이 남방항공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14.1.4. 보안 검색에 응하지 않은 경우.
- 14.1.5. 유효한 여행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 14.1.6. 유효한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았거나 환승 중 해당 국가로의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유효한 여행 증명서가 없는 경우, 여행 중 여행 증명서를 파기한 경우 또는 요청 시 항공사 직원에게 영수증에 대한 여행 증명서 제시를 거부한 경우.
- 14.1.7. 정상적으로 항공권의 요금 및 세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 14.1.8. 여객이 제시한 항공권:
 - 14.1.8.1. 불법적으로 획득하였거나 발권 당사자 혹은 권한을 위임 받은 대리인이 구매한 항공권이 아닌 경우.
 - 14.1.8.2. 이미 분실신고가 되었거나 도난 당한 경우.
 - 14.1.8.3. 위조 된 경우.
 - 14.1.8.4. 남방항공 혹은 공인 대리점이 아닌 곳에서 변경한 항공권을 제시한 경우.
- 14.1.9. 항공권을 제시한 사람이 본인이 항공권 상 여객 성명란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14.2. 운송을 거절당한 여객에 대한 처리

- 14.2.1. 여객이 14.1.1항의 원인으로 운송이 거절 당하여 환불을 요청할 경우, 남방항공은 본 약

관의 12.6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14.2.2. 여객이 14.1.2항, 14.1.3항, 14.1.4항, 14.1.5항, 14.1.6항의 원인으로 운송을 거절 당하여 환불을 요청할 경우 남방항공은 본 약관의 12.7항의 규정에 따라 합당한 서비스 비용을 제외한 비용을 환불한다.
- 14.2.3. 14.1.8항, 14.1.9항의 원인으로 운송을 거절 당한 경우 남방항공은 해당 항공권을 압수하거나 보류할 권리가 있다.

14.3. 운송 제한

보호자 비동반 소아, 금치산자, 임산부, 환자 또는 죄인 등 특수승객은 반드시 예약 시 남방항공에 신청해야 하며, 남방항공의 규정에 부합되는 조건 아래, 남방항공에서 동의를 얻어야 운송이 가능하다.

제 15조 출입국 수속

15. 사용범위

15.1. 법령의 준수

여객은 일체의 여행서류, 비자를 취득하는데 책임을 지며, 여객이 출발, 입국 또는 일시 체류하는 국가의 모든 법령, 규정, 명령, 요구사항 및 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는데 있어서 책임을 진다. 남방항공은 여객이 당해 서류를 취득하지 못하거나 또는 당해 법령, 규정, 명령, 요구사항, 요건 또는 지시를 준수하지 못해서 여객에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5.2. 여행 관련 증명서

여객은 여행에 앞서 모든 출국, 입국, 건강 및 기타 법률, 규정, 명령, 요구 및 관련 국가의 요구사항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를 제시하여 남방항공이 그 사본을 취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남방항공은 여객이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거나 여행 증명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 운송을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



15.3. 입국거부

경유국 또는 목적지 국가에서 여객의 입국 불허로 인하여 남방항공이 정부의 명령에 의거 여객을 그의 출발지 또는 타 지점으로 송환하여야 할 경우, 적용법령 및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여객은 송환에 관련된 적용 운임을 남방항공에 지불하여야 한다. 미 탑승구간의 운송을 위해 여객의 남방항공에 지불한 금액 또는 남방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여객 소유의 금전을 남방항공은 당해 운임의 지불에 사용한다. 입국거절 또는 추방지점에서의 운송을 위해 징수한 운임은 환불되지 않는다.

15.4. 여객의 벌금, 구류 비용 등에 대한 책임

여객이 법률, 규정, 명령, 요구 또는 기타 관련 국가의 여행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필요한 문서를 제시하지 않은 결과로 남방항공에 벌금, 위약금 또는 기타 비용이 발생한 경우 해당 여객은 요금에 따라 지불한 금액이나 발생한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남방항공은 이러한 지불이나 비용을 항공권의 미사용 부분 가액이나 남방항공 소유의 여객 자산에 적용할 수 있다.

15.5. 세관검사

여객은 필요 시 세관이나 정부 당국자의 수하물 검사에 응해야 하며, 남방항공은 이러한 검사 과정 중 발생하거나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여객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15.6. 보안검사

여객은 반드시 정부, 공항 당국자, 항공사 또는 남방항공에서 요구하거나 필요한 안전검색 조치를 받아야 한다.



제 16조 고객 서비스

16. 사용범위

16.1. 기내식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기내식은 무료로 제공된다. 단 남방항공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수량을 초과한 경우 기내식 서비스는 보장되지 않는다.

16.2. 지상운송 서비스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남방항공은 공항지역 내, 공항과 공항간 또는 공항과 시내간의 지상운송 수단을 보유, 운행 도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당해 지상운송수단의 수배를 위해 여객을 돕는 과정에서 남방항공의 직원, 대리인이 행하는 여하한 행위도, 당해 독립된 운항업체의 작위 도는 부작위에 대해 남방항공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6.3. 숙박

숙박비는 여객 운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스케줄에 따른 숙박 또는 여타 체류 시 일체의 비용은 여객이 부담한다.

여객은 일체의 여행서류

제 17조 손해 배상 책임

17. 사용범위

17.1. 적용 법규

본 약관에 의한 국제 운송은 개정 바르샤바 협약에서 정의된 국제 운송인 경우에는 개정 바르샤바 협약에서 정하는 책임과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17.2. 17.1항에 정하는 바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남방항공이 행하는 운송 서비스

17.2.1. 남방항공은 당사의 태만 또는 고의적인 과실에 기인하여 여객 및 기타 위탁 수하물에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책임을 진다. 그러나 손실이 여객의 과실로 발생 되었을 경우



남방항공의 손해배상 책임은 축소된다.

17.2.2. 남방항공의 고의적인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 남방항공의 손해배상 책임은 다음과 같다.

17.2.2.1. 남방항공은 여객의 사망, 부상 또는 기타 신체상해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에 대하여 반드시 법률에 의거하여 책임이 제한된다

17.2.2.2. 본 약관에 열거되어 있는 책임 외 남방항공은 여객의 지연에 대한 책임을 갖지 않는다.

17.3. 책임 범위

협약 또는 기타 적용법령에 별도로 정하는 바를 제외한 남방항공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17.3.1. 남방항공은 해당 항공편 또는 항공 구간용 항공권의 항공사 부분에 남방항공의 항공사 지정 코드가 표시된 항공편 또는 항공 구간의 항공 운송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 남방항공이 타 항공사의 운송을 위해 항공권을 발행하였거나 수하물을 위탁한 경우 다른 항공사의 대리인으로서만 이를 수행한다.

17.3.2. 남방항공의 태만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남방항공은 여객의 비위탁 수하물에 대한 손실을 책임지지 않는다.

17.3.3. 남방항공이 법령, 정부규정, 명령 또는 요건을 준수함으로써 남방항공이 관리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또는 여객이 이들 법규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남방항공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7.3.4. 본 약관 9.5.1항에 의거하여 위탁 수하물의 신고한 종가요금 비교적 높을 경우 남방항공의 책임은 신고한 종가요금에 국한한다.

17.3.5. 본 운송약관에 의거하여 운송으로부터 발행하는 간접손해 또는 특별손해 및 징벌적 배상에 대하여 남방항공은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7.3.6. 남방항공은 여객 자신의 수하물 내용품에 기인한 여객의 수하물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여객은 자기 물품에 의하여 타 여객의 수하물 또는 남방항공의 재산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당해 여객은 이에 따라 남방항공이 입은 일체의 손실 및 비용을 남방항공에 배상하여야 한다.

17.3.7. 남방항공은 여객의 위탁 수하물에 포함되어 있는 파손되기 쉬운 물건, 부패성 물건,

화폐, 보석류, 은제품, 유가증권, 기타 귀중품, 서류 또는 견본의 분실, 손상 또는 인도의 지연에 대하여 남방항공은 일반적인 손해배상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17.3.8. 남방항공은 여객이 운송 도중 연령, 정신 혹은 건강상의 이유로 본인이 위험을 야기한 경우, 사망을 포함하여 여객의 신체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 부상 또는 장애나 승객 상태의 악화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17.3.9. 본 약관 및 적용 태리프에 설정된 남방항공의 면책 또는 책임 한도에 관한 제반 규정은 남방항공의 대리인, 직원 및 대표자 전원에게 적용이 되며, 본 대리인, 직원 및 대표자가 손해 배상을 해야 하는 어느 경우라도 남방항공의 책임한도를 넘어서 안된다.

17.4. 약관과 협약의 연관성

열거된 약관들 이외, 본 약관은 협약과 모든 법률 규정의 면책청구권 및 책임한도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17.5. 손해배상 책임한도

바르샤바 협약 제 22조 1항에서 명시한 특별규정에 근거하여, 남방항공은 협약에서 정한 국제 운송 관련 책임에 관하여 동의하며, 손해배상 책임 한도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집행한다.

17.5.1. 17.5.2항의 상황 이외 사망, 부상 또는 기타 신체상해에 대하여 남방항공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경우:

17.5.1.1. 본 청구에 대하여 바르샤바 협약 제 22조 1항에 따른 책임한도를 주장하지 아니한다.

17.5.1.2. 본 청구에 대하여 SDR 100,000(국제통화기금이 정하는 특별인출권) 이하의 부분에 대하여는 협약 20조 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7.5.1.3. 본 약관 중 17.5.1.1항, 17.5.1.2항의 규정 이외, 남방항공은 소송상의 청구이거나 소송 이외의 청구이거나 불문하고 협약에서 정하여진 일체의 권리를 가진다. 또한 남방항공은 제 3자에 대하여 분담 및 면책청구권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구상권을 보유한다.

17.5.2. 본 약관 중 17.5.1.1항과 17.5.1.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기관 또는 기타유사기관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남방항공은 협약 제 20조 1항 및 22조 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 18조 효력 및 수정

18. 사용범위
- 18.1. 본 약관은 2003년 7월 18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실행하도록 한다. 남방항공에서 1999년 1월 1일 실행하였던 <중국 남방항공 주식회사 여객, 수하물 국제운송조건>은 동시에 폐기하도록 한다.
- 18.2. 남방항공은 중국 민용항공당국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전 통지 없이 본 약관 중 어느 조항이라도 수정이 가능하며, 수정 전에 이미 운송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된 약관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 18.3. 남방항공의 대리인, 직원 및 대표는 균일하게 본 약관 중 어느 조항이라도 변경, 수정 및 폐기할 권리를 지니고 있지 아니하다.
- 18.4. 본 약관의 해석권은 중국 남방항공 주식회사에 속해 있습니다.

